

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, 민간기관에서도 이용 가능

- 2014년 제도도입 이후 최초 민간기관 지정 -
- 온누리국제영업비밀보호센터, LG CNS, 레드윳 등 3개 기관 -

특허청(청장 김완기)은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*의 품질 향상을 위해 민간 기관 3곳(온누리국제영업비밀보호센터, LG CNS, 레드윳)을 영업비밀 원본 증명기관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.

* 영업비밀이 포함된 전자파일이 원본인지 증명하는 서비스로 현재 한국지식재산보호원 1곳에서 서비스 수행 중

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를 이용하는 영업비밀 보유자는 원본 전자파일에 추출한 ①전자지문, 원본등록 신청자의 ②전자서명, 원본등록 당시 ③시간 정보를 원본증명기관에 등록하여 원본유출 우려 없이 영업비밀 보유사실과 보유시점을 입증할 수 있다.

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, 대학, 공공연 등은 영업비밀 요건 중 비밀관리성을 입증하는 데, 개인들은 공모전 출품 시 아이디어 권리자를 증명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. 원본증명서비스 이용건수는 '23년 누적 20만건을 돌파하였고, '24년 말 기준 누적 21.5만건을 기록하였다.

2014년 원본증명제도를 포함한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시행 이후 공공기관들만 원본증명기관으로 지정되었으나, 이번에 민간기관들이 최초로 지정됨으로써 영업비밀 보유자들은 4개 기관(한국지식재산보호원 포함) 중 희망하는 기관을 선택하여 원본증명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.

특허청 신상곤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“제도시행 이후 최초로 민간 기관들이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으로 지정되어 서비스 품질이 향상되고, 민간의 역량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”며, “앞으로 특허청은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의 보안수준, 인력 등의 점검·관리에도 힘써 우리 기업·대학·공공연 등의 영업비밀이 제대로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”고 밝혔다.

※ 붙임 :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 개요·신규지정기관 현황 및 활용사례

담당 부서	산업재산보호협력국 산업재산분쟁대응과	책임자	과 장	김준경 (042-481-5182)
		담당자	사무관	오세진 (042-481-3573)
			주무관	이영은 (042-481-5455)

□ 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 : 現 한국지식재산보호원 1개 기관 운영 중

○ 이용현황 : ('22) 12,978건 → ('23) 12,684건 → ('24) 14,034건(누적 21.5만건)

□ 원본증명서비스 : 전자파일의 원본여부, 보유자 및 보유시점을 입증

○ (방식) 원본 전자파일에서 추출한 ①전자지문, 원본등록 신청자의 ②전자서명, 원본등록 당시 ③시간정보를 원본증명기관에 등록

* 타임스탬프(Time Stamp) : 전자문서가 특정시점에 존재하였다는 '존재증명'과 그 이후 데이터가 변경되지 않았다는 '내용증명'을 해주는 전자적 기술



○ (효과) 원본유출 우려 없이 영업비밀 보유사실 및 보유시점을 입증*

* 원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전자지문 등록 당시에 해당 전자문서의 기재 내용대로 정보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(부정경쟁방지법 제9조의2 제3항)

□ 신규지정기관 현황

순번	업체명	관련 기존 서비스
1	온누리국제영업비밀보호센터	전자지문·비밀원본 보관
2	LG CNS	공인전자문서센터(과기부 지정)*
3	레드윌	전자연구노트** 관련 서비스

* 전자문서의 보관, 시점확인(타임스탬프 검증), 원본증명(원본증명서 발급) 등의 서비스 제공

**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에 의해 R&D 참여기관은 연구노트 작성·관리가 필요

□ 원본증명서비스 활용사례



영업비밀 관리 입증

“일반정보와 영업비밀을 구분”하여 관리한 사실과 “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의지 표시”를 입증할 수 있으며, “분쟁에 대비한 영업비밀 관리 증거 확보” 가능



거래 협상 시 기술유출 방지

납품 협상, 기술제휴, 기술이전, 공동 연구개발 등을 위한 사전 협상과정에서 자사 영업비밀을 제공해야 하는 경우 원본등록 사실을 상대방에 고지함으로써 기술탈취 방지 가능

영업비밀 보호 관점

직원이직 시 영업비밀 보호

연구개발 정보, 기술 노하우 및 고객정보 등 자사 영업비밀을 취급하던 직원이 퇴사하는 경우 경업금지약정 체결과 함께 현실적인 영업비밀 유출 방지수단으로 작용

임직원 영업비밀 보호 인식제고

사내외에 원본증명 등록 사실 고지를 통하여 자사 영업비밀 유출 시 형사처벌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워 임직원의 영업비밀 보호 인식 제고와 유출심리 억제 효과 발생



특허분쟁 대비 (선사용권 입증)

자사에서 영업비밀로 관리하고 있는 기술에 대하여 타사에서 특허 침해소송 제기 시 특허법 제103조(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)에 따른 무상통상실시권 주장 증빙자료로 활용



연구개발 중인 기술보호 (모인 특허출원 대비)

자사에서 연구개발 중인 기술이 제3자에게 유출되어 모인(횡령) 특허출원이 발생하는 경우 특허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정당한 권리자 주장을 위한 입증자료로 활용



법적분쟁 대비 관점

경진대회 출품작·아이디어 보호

정부부처, 지자체, 공공기관 및 사기업 등에서 주최하는 아이디어 공모전에 응모하는 경우 제안 아이디어 또는 출품작의 권리자임을 입증

